



상해 웨이화 플라스틱 유한공사 VS 세용광 등의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17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상해시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5)沪高民三 (知) 终字 第15号
판결 일자	2005년 3월 15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권리자 패)
원심원고(상소인)	상해 웨이화 플라스틱 유한공사		
원심피고(피상소인)	1. 세용광, 2. 상해 하오리 플라스틱 제품 포장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8조		
영업비밀	고객명단 및 관련 자료		
키워드 (Keyword)	고객명단(客户名单), 신규성(新颖性), 최소 정보량(最低程度的信息量)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상해 웨이화 플라스틱 유한공사(이하 '웨이화 공사')는 PVC 폴리염화비닐 생산 및 판매 회사이다. 원심 피고 세용광은 1999년 웨이화 공사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02년 12월 1일 <웨이화 공사 사원 수칙>에 서명하였고, 같은 달 25일 <협약서>에도 서명하였으나, 바로 사직하였다.

상해 하오리 플라스틱 제품 포장 유한공사(이하 '하오리 공사')는 2002년 9월 설립된 플라스틱 제품과 전자부품 생산 및 가공 회사이며, 세용광은 하오리 공사의 투자자 중 한명이며, 집행동사이자 총경리이다.

웨이화 공사는 원심 피고들에 대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할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웨이화 공사의 고객명단이 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신규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이 보호하는 고객명단으로 요구되는 최소 정보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보아서, 웨이화 공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웨이화 공사가 불복하여, 본 법원에 상소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	⇐	원심 피고(피상소인)
웨이화 공사의 고객명단은 상업비밀이다.			웨이화 공사의 고객명단은 상업비밀이 아니다.
세용광이 <웨이화공사 사원수칙>, <협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상업비밀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웨이화 공사는 고객명단에 대한 비밀보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원심 피고들이 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			원심 피고들은 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

04 판결 요지

상업비밀이란 대중이 알 수 없고, 권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며, 실용성을 가지고, 권리인이 비밀보호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경영정보인 고객명단은 상업비밀로써 법적 보호를 받고, 또한 법이 정한 상업비밀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하오리 공사가 유출된 고객명단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명단 속의 공사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명단 속 공사가 자발적으로 하오리 공사와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웨이화 공사가 주장한 상업비밀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원심에서 쟁점이 된, 고객명단의 '신규성'과 '법적 보호를 받는 최저 정보량'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와 관계없이, 원심 원고 웨이화 공사의 상소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05 Key Point

중국의 상업비밀 관련 판례에 있어서, '고객명단'이 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자주 다투어진다. 본 사건의 원심판결은 '법의 보호를 받는 고객명단'은 비밀성, 신규성, 가치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신규성'은 해당 고객 명단을 쉽게 획득할 수 없고, 일정한 노력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업종 종사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고객명단'이 되기 위하여 최소 정보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실시하고 있으나, 최소 정보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본 상소심 판결은, 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의 당부를 정면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고객명단 속 공사가 자발적으로 원심 피고들과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업비밀 침해를 부인하였다. '법의 보호를 받는 고객 명단'의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